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최유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의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동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·학예 분야의 교류·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으나,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

- 특히 동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’은 단 한 차례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며,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북한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, 학생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운영성과나 실적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한정된 재원을 더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도 ‘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’ 폐지하거나 타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『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』 폐지를 통해 관련 법의 준수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, 기금 적립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,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